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76
----------	-------

발의연월일 : 2025. 8. 21.

발 의 자 : 김영진 · 안호영 · 염태영
권칠승 · 안태준 · 윤후덕
허영 · 소병훈 · 유동수
김한규 · 송기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이 업무를 마약류, 유해물품 등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신체에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한 후 이에 불응 시 세관공무원이 직접 신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5조 등).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석궁”을 “석궁(이하 “무기류”라 한다)”로 한다.

제2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행자, 승무원, 그 밖에 입국하는 자의 신체·휴대품을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한 결과 마약류, 무기류 및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직접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

1.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

2. 제206조제1항제2호나목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③ 제2항에 따른 신체 검색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검사업무

가. (생 략)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
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 및 석궁

② ~ ⑤ (생 략)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
에 대한 검사 등) (생 략)

<신 설>

가. (현행과 같음)

나. -----

-----석궁(이하 “무기류”
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
에 대한 검사 등)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행
자, 승무원, 그 밖에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을 관세청장이 고
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한 결과 마약류, 무기류 및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
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
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
록 요구하고, 요구에 따르지 아
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직접 신
체 검색을 할 수 있다.

1.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검
사업무

<u><신 설></u>	2.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의 유 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 대하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③ 제2항에 따른 신체 검색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